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1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3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6월 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2) 주요내용

-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자전거 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5,764건의 사고(연평균 100명 사망, 6,128명 부상)가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평균
발생(건)	6,920	5,936	5,659	4,771	5,633	5,667	5,764
사망(명)	107	113	126	91	79	83	100
부상(명)	7,333	6,292	5,932	5,041	6,020	6,150	6,128

※ 자료 : 경찰청

-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자전거 보험 가입 따른 보험의 보장 내용, 약관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